

#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2015. 5. 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은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 **4. 관계법규**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2004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당직수당(일·숙직비) 기준액이 2014년도부터 당직수당을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예산편성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4.7월)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가. 안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하던 당직수당(일·숙직비) 기준 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이 종전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당직수당은 당직실 상태,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당직시마다 6만원씩 지급(다만,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의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만원씩 지급)하여 2004년도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었으나, 2014년도부터 당직수당을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예산편성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급하도록 당직수당 운영방식이 변경

됨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 속직, 휴무일 근무자 구분 없이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일률적으로 6만원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인 당직수당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1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를 “당직근무자에게”로 하며,

**안 제4조** 중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로 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당직수당을 조례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직수당을 6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정함에 따라 2015년 5월 현재 타 자치구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6만원이 22개구, 5만원이 3개구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6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됨.

○ 또한, 동(同)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당직수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9. ~ 4.8.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고, 향후에도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내려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함 보다는 “당직수당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당직수당조정을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 2014년 예산편성부터 적용(2013.7.29. 개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7. ~ 8. 생략

### [별표 6 : 일·숙직비]

-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 ② 기준액

구 분	단 위	단 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2014.7.30부터 시행)

\*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한도액(20% 자율조정) = 5만원×120% = 6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12.7.26] [조례 제549호, 제정 201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26>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0,000원씩 지급한다. 다만,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의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000 원씩 지급한다. <개정 2006. 2. 2, 2012. 7.26>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제4조(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6>

## **부 척<2003.11.2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척<2006.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척<2012. 7.26>**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 고 자 료

## ■ 타 자치구 조례 현황(9개구만 조례로 정함)

계	폐지	개정	미 개정	기타
25	2 성북구, 서초구	6 은평구, 중랑구, 양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북구,	3 중구, 마포구, 강서구	14 구로구, 금천구, 용산구, 동대문구,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종로구, 도봉구, 강동구, 동작구

※ 기타는 조례 미제정, 복무조례 등에 규정

## ■ 타 자치구 당직수당 지급 현황

계	5만원 지급	6만원 지급
25	3 강서구, 용산구, 성북구	22 중구, 은평구, 중랑구, 양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서초구, 강북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종로구, 도봉구, 강동구